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은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564

발의연월일: 2021. 9. 14.

발 의 자:이은주·장혜영·강은미

류호정 · 최혜영 · 심상정

용혜인 • 배진교 • 이수진(11)

박홍근 · 김홍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풍·지진·산불·수해·붕괴·코로나19까지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. 이 같은 자연·사회재난 이 발생하면 인명·재산피해 못지않게 반려동물들의 피해도 크게 나 고 있음.

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%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,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고려한 사회안 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미국, 일본,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재난 시 동물의 대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, 재난 상황 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의무와 역할을 법률 등 에 규정하고 있음.

반면 우리나라는 현행 재난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반려동물 보호 또

는 구조에 대한 사항은 들어있지 않음. 이 때문에 재난 시 반려동물의 안전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관련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음. 이에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위해 대피를 포기하는 등 사람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. 실제 2019년 고성 산불 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임시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량에서 지내거나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문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.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려동물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임.

이에 재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대피시키는 1차적 의무는 보호자에게 있음을 상기시키는 한편,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, 제2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재난 시 동물의 대피)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적정한 사육・관리) ① ~	제7조(적정한 사육・관리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
	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
	<u>력하여야 한다.</u>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제22조의2(재난 시 동물의 대피)
	<u>시・도지사와 시장・군수・구</u>
	청장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
	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
	원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
	<u> 여야 한다.</u>